

업 무 협 약 서

십대여성인권센터와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· 마포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호 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· 마포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 및 내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·협력하기로 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.

- 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심리·의료·보호 지원 인프라 공유 및 인적 교류
- ②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유기적 사례 협력 및 모니터링
- ③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공동 기획·운영
- ④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협력
- ⑤ 기관 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보

제3조(협약이행)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효력 발생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상호 이익이 없으면 효력은 유지된다. 또한 양 기관은 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보장)

십대여성인권센터와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· 마포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, 상호협력 사항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한다.

제6조(협약사항의 추가 및 변경)

본 협약내용에 대한 새로운 내용 삽입, 수정, 삭제 등의 추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 협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25. 12. 19.

십대여성인권센터
대표 조진경 (인)



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마포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센터장 안현진 (인)

